

# 서울고등법원

## 제 24 민사부

### 판 결

사 건 2011재나498 신분보장받을 권리확인 청구의 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임그루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다세대주택 에이동 103호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케이티 노동조합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자 위원장 김구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탐

담당변호사 박정익, 조영선, 이승연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7. 13. 선고 2009가합9702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 21. 선고 2010나7358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15.

판 결 선 고 2012. 1. 19.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 판결과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재심청구의 사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원고의 이 사건 신분보장받을 권리확인 청구의 소는 행정사건으로서 관할법원인 행정법원의 심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을 한 이 법원은 이를 민사사건으로 취급한 지방법원 지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으로서 심판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소정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고, 둘째,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갑 제8호증 내지 제17호증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하여 이 법원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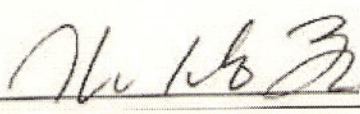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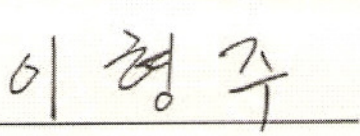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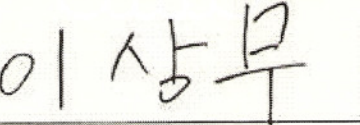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의 조합원인 원고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던 끝에 이 사건 징계해고라고 하는 '조합활동으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기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 규약 제12조 및 신분보장규정 별표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 대한 '신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들어, 피고에게 임금 피해액 상당의 20,000,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피고 규약 제12조의 '조합활동으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의 항소에 따라 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더 나아가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추가로 더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위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덧붙여 원고의 위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민사사건으로서 제1심 및 이 법원은 적법한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원고의 항소심 추가 제출 증거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하고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준		
	판사	이형주		
	판사	이상무		





# 정본입니다.

2012. 1. 20.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장준배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